

미수 동결 제도

미수동결제도는 합리적인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미수발생 투자자에게 위탁증거금을 현금 100% 징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용대상 및 기간

미수발생 투자자에 대해서는 미수 발생 익일부터 **30일간(Calender Day, 영업일기준 아님)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징수하게 됩니다. **결제일(T+2일)에 결제 대금이 납입되지 않는 경우 동결 계좌로 지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제일 전 주식을 매도하였더라도, 결제일에 결제 대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는다면 미수 동결계좌로 지정이 됩니다.

- **결제일까지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매수 후 결제일 전(T+1일 또는 T+2일) 주식을 매도하였으나, 결제일(T+2일)에 결제 대금이 부족한 경우**
⇒ **30일간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징수!**

적용범위

미수동결제도는 계좌단위가 아닌 고객단위로 관리가 되는 것으로 한 계좌가 미수 동결계좌로 지정이 될 경우, 해당 고객의 전 위탁계좌(타 증권사 포함)가 미수 동결계좌로 지정이 됩니다.

미수 동결계좌는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외사항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결계좌에서 제외됩니다.

- 1) 결제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2) 대출(신용) 이자 또는 배당에 따른 세금 등 유가증권 매매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금액의 미납인 경우
- 3) 천재지변, 긴급사태, 전산장애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결제가 지연된 경우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된 경우 결제기준의 미수금을 해소하기 전까지는 매도체결후에도 재매수금액을 사용한 현금 재매수는 불가합니다. 단, 재매수금액을 사용한 신용매수는 가능합니다.

본제도는 2007년 4월 26일 미수거래로(4.26일 주문) 4.30일 결제 불이행한 계좌부터 미수동결계좌로 지정이 되며, 전 증권사 공통으로 시행됩니다.

참고 : 증권선물거래소(<http://www.krx.co.kr/index.html>)